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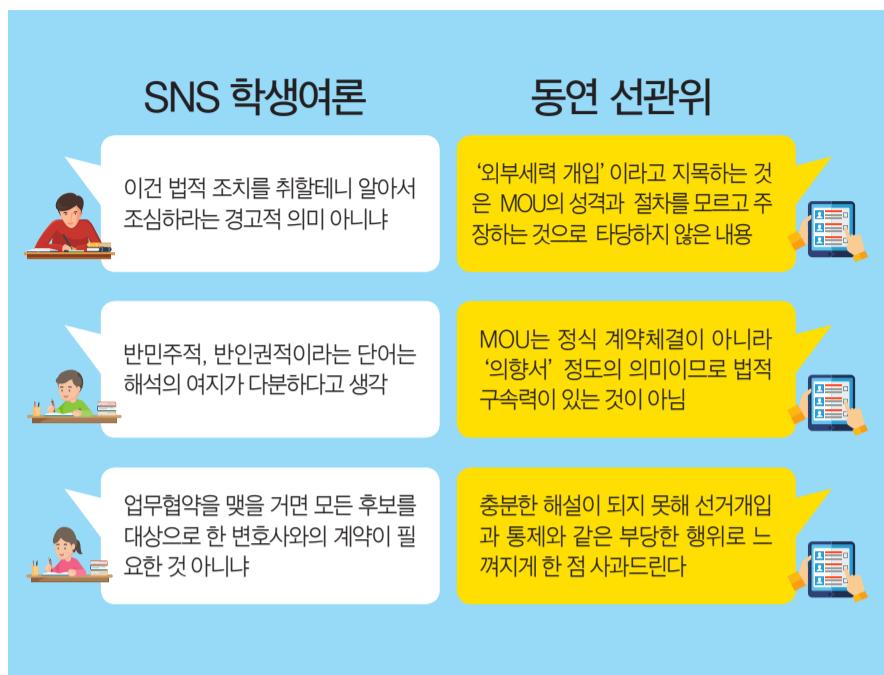
# 동연 선관위 업무협약 '외부 세력 개입' 논란

신정인 기자 sj0201@knu.ac.kr

【국제】 지난 10일 중앙동아리연합회(동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페이스북, 에브리타임 등을 통해 법무법인 '다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음을 공지했다. 동연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와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변호사 겸 사이버 명예훼손 담당 조지 훈 변호사님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라며, 이는 "학생회 선거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반민주, 반인권적 행위들을 미리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는 직·간접적인 선거 관련 게시물에서 인권적, 민주적 기준에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법적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협약서가 공표된 이후 일부 학생들은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업무협약 체결이 선거세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통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외부세력 개입의 문제, 표현의 자유 억압의 문제, 그리고 변호사의 중립성 문제로 압축된다.

먼저, 법무법인과의 업무협약 체결이 선거에 그 어떠한 외부 세력도 개입할 수 없다는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2조 제3항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동연 선관위는 "이번 협약에서 변호사님의 역할은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라 선관위가 조언을 요청할 경우에만 자문을 하는 형태"라고 해명했다. 정태호(법학전문대학원) 교



수는 "기성 정치의 경우 선관위 자체가 법관을 포함한 법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 내 선관위는 선거세칙 해석과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문제"라며 "선관위가 협약을 맺은 것은 학생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조 변호사도 동연 선관위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에서 "이 업무 협약은 동연 선관위의 조치에 대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동연 선관위가 요청하는 질의 사항에 관해서

만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다.

그렇지만 업무협약서를 공표함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성아(정치외교학) 교수는 "협약을 맺은 배경이 무엇이든 업무협약서의 공표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데 있어 심리적인 위압감을 줄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해 토론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장려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이 업무협약은 올바른 선거문화 확립에 역할

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해석이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다산의 담당 변호사와 동연 선관위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대한 의혹 또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동연 선관위 백승준(유전공학 2015) 위원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까운 영통에서부터 도움을 주실 변호사분들을 수소문하던 도중 조 변호사와 연락이 달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더불어 백 위원장은 "변호사 선정과정부터 공개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학생분들로 하여금 변호사와의 유착 가능성과 그분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결국, 동연 선관위가 학생들에게 업무협약의 목적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학교 학생대표 선거를 통틀어 이런 형태의 업무협약 체결은 최초다. 그러나 동연 선관위는 이번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구성원들에게 통보했다. 또한,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윤 교수는 "공개된 업무협약서만으로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협약한 법무법인의 역할과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업무협약의 적용대상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업무협약서의 공개만으로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하민(글로벌커뮤니케이션 2014) 학생은 "이 업무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이 교내선거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충분히 예전하지 못한 점도 선관위의 과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더하여 윤 교수는 "선거기간 내 고발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선관위가 이에 대해 검토한 후 때에 따라 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절차"라며 "굳이 업무협약을 맺지 않아도 되는 사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표하다 보니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업무협약은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업무협약서를 작성해 이를 대중들에게 공표하는 데 더 주안점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백 위원장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마련인데 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절차적인 효율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2조(선거원칙)

③ 현 학생자치기구나 학교 당국 그리고 어떠한 외부 세력도 개입할 수 없다. 단, 선거 진행에 관해서 학교 당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선출 절차 과정에 반하는 부당행위를 개입으로 본다.

## 중선관위, '외대 서울캠퍼스 이전 공약' 언급한 외대 김주와 회장 징계 안하기로

이수형 기자 dtb112@knu.ac.kr

【국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외국어대학 김주와 회장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0일,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외국어대학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uni-khu' 선본이 제시한 '외국어대학의 서울캠퍼스 이전을 통한 학문별 통합 캠퍼스 조성을 요청' 공약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일었다.

김주와 회장은 실명을 밝히며 이 공약과 관련해 현임 학생회가 대학본부와 논의해온 내용을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외국어대학의 서울캠퍼스 이전 가능성이 있으

니 기다려보자"는 게 대학본부 입장이다"라는 등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한 점이 문제가 됐다. 김주와 회장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느껴 댓글을 삭제하겠다"며 "징계여부를 포함한 중선관위의 결정을 기다리며 자중하고 있겠다"고 말했다. 김주와 회장은 중선관위에 자진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제6차 중선관위 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외국어대학 김명선 부회장은 "김주와 회장이 잘못했으므로 선관위와 학생회장을 사퇴해야 한다"라며 "(김주와 회장이 uni-khu 선본 출마자와) 학생회를 같은 향으로 학생들의 비난이

무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총여학생회, 생명과학대 선관위원회 등 대다수 중선관원들은 '김주와 회장이 단 댓글들이 해당 선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퇴를 반려했다.

동아리연합회 선관위원회는 사퇴반려 근거로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선거시행세칙 제29조 제4항은 '기존 학생회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보장하며 맞고 틀림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기존 학생회는 필요에 따라 제기된 평가와 비판에 대해서만 반론 및 해명,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단, 평가와 비판은 반드시 그에 맞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아리연합회 선관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김주와 회장이 기존 학생회에서 논의되던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은 세칙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잘못되지 않은 행위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선거운동 당사자가 현임 학생회를 비판할 수 있고, 현임 학생회는 이에 대해서만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김주와 회장의 경우 세칙에 명시된 'uni-khu' 선본이 제기한 비판에 대응한 것'이 아니다.

총여학생회 선관위원회는 사과문이 필요함을 주장하자, 생명과학대 선관위원회는

"잘못에 기반을 둔 사과문이 아닌 여론에 의해 작성된 사과문이 과연 옳은가"라며 김주와 회장에 대한 비난여론을 '부당한 여론'으로 규정했다. 결국 김주와 회장 징계는 무산되고 경위서 제출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주와 회장은 이후 인터뷰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11월에 예정된 학생회 행사를 진행한 뒤 자진사퇴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출된 경위서에 김주와 회장은 "선관위원회로서의 중립성을 의심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다"며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유권자 분들께 죄송하다"고 적었다.

##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1. 신청대상: 2004~2007학년 대학생 중, 금학기 면제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2.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 대학영어
- "시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학논문작성법"
- 전산양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3. 면제기준 및 자격

가. 대학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 공인영어시험능력지로 계열별 TOEFL, TOEIC, TEPS 일정점수 이상자
- 국제영어 출신 TOEFL, TOEIC, TEPS 전형 입학자
- 영어로 졸업 외국인 특례학자
- Intensive Program(DEEP, LEAP, REACH) 이수자
- 국제교류처주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4. 이수면제 기준표

면제 종류	계열	대학	면제 기준				면제내용
			TOEFL CBT	IBT	TEPS	TOEIC	
외국어계열 사회계열	외국어대학 국제·영역대학	207 이상	76	600 이상	700 이상	66(Level2) 이상	과목면제
공학계열 자연과학 능력자	전자정보대학 응용화학대학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우주과학과)	193 이상	69	551 이상	650 이상	57(Level2) 이상	실시일기 기준 현재 최근 2년 이내 점수에 한함
	공과대학 생명과학대학 응용과학대학(응용화학과)	190 이상	68	530 이상	640 이상	56(Level2) 이상	
	예체능계열 체육대학 예술·디자인대학	147 이상	51	400 이상	510 이상	57(Level3) 이상	

※ 외부 공인기자격증 제출은 매 학기 기준으로 신청자와 신청 기간에 신청서와 성적표(원본)를 제출한다.

면제 종류	지역	면제내용
국제화총진 청원입학자	국제화총진 TOEFL, TOEIC 전형 입학자	과목면제
특례입학자(영어권)	영어권 국적 외국인 또는 영어권 교포자녀, 영어권 재외국민	과목면제
Intensive Program 이수자	국제교류센터가 인정하는 - 재학 중 영어로 학점 교육자/학업 연수자로 선발된 자 - 외국 영어권 학교의 과정을 수료하고 상급성적을 취득한 자에 한함. - 영어권 국가에서 학점 인정 가능한 영어 연수생/교류학생 - 대학 설립 및 공공 교육기관(Program)에서 48시간(3시간 x 16주) 이상 이수한 후 고급 성적을 취득한 자. - 평생교육원 DEEP, 국제교육원 LEAP, REACH 집중 프로그램 과정을 출석한 80% 이상, 성적상급수준으로 수료한 자.	과목면제

※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Intensive Program 이수자들은 증빙서류 제출한 자에 한하여 상황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며, 통과자에 한하여 과목을 면제한다.(신청 기간에 제출)

※ 공학인증(ABET)은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불가

나. 외국어대학 대학영어/전문영어 이수 면제기준

- 외국어대학 학과 특수성이 의해 특정과목 수강으로 '대학영어'와 '전문영어'의 이수를 대체할 수 있음
- 자신의 재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의 외국어 1, 2년계를 이수하는 것으로 핵심교양 이수를 대체할 수 있음

[대체교과목]

제1단계	제2단계	총 이수학점
초급중국어회화1	초급중국어회화2	6
일본어강독1	일본어강독2	6
스페인어1	스페인어2	6
러시아어1	러시아어2	6
초급프랑스어1	초급프랑스어2	6

※ 이수면제를 신청하는 외국어대학 소속 학생은 외국어대학 행정실(T-031)-201-2201에 별도 접수 바랍니다.

다. 시과와 표현 영역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 1단계: '독후감 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후 구술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2단계 시험자격 부여
- 2단계: '글쓰기 시험' 80점 이상

[이수면제 기준표]

※ 신청서 제출은 매 학기 기준으로 신청 기간에 제출한다.

단계

내용

평가 방법

학점

비고

1단계

독후감 평가

80점 이상